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48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서영교・인재근・이형석

김영배 · 양경숙 · 윤준병

김민석 • 이정문 • 한병도

박홍근 · 양정숙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또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 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담는 「정보경찰 활동규칙」이 제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처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	제2조(직무의 범위)
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치안정보</u> 의 수집·작성 및 배	4. <u>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u>
王	<u> 방과 대응 관련 정보</u>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
	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
	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u>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
	적인 범위 및 처리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8조의2</u> (국제협력) (생 략)	제8조의3(국제협력) (현행 제8조
	의2와 같음)